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수진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640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위원회 위원 및 건보공단·심평원 임원 추천단체 정비	3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64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5. 30.

(3) 회 부 일 : 2025. 6.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

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제1호, 제20조제4항제1호,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65조제4항제3호).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위원회 위원 및 건보공단·심평원 임원 추천단체 정비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 관련 근로자대표 추천단체를 ‘근로자단체’ 또는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제20조제4항, 제34조제2항 및 제6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u>근로자단체</u>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 4. (생략) ⑤ ~ ⑦ (생략)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u>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u> ----- ----- 2. ~ 4.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임원) ① ~ ③ (생략)	제20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u>노동조합·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u>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2. (생략) ⑤ ~ ⑦ (생략)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1항제1호의 위원은 <u>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u>에서 추천하는 각 5명 2. 3. (생략) ③·④ (생략) 제65조(임원) ① ~ ③ (생략)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한 관계 공무원 1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2. (생략)	음) ④ ----- -----. 1. <u>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u>----- ----- 2.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u>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u>----- ----- 2.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65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2. (현행과 같음)
---	--

3. <u>노동조합·사용자단체·소비자</u> 단체 및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 는 각 1명	3. <u>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u> <u>노동단체</u> ----- -----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름.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원에 대하여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름.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조¹⁾ 및 제33조²⁾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2. 제22조에 따른 약제·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
 3. 그 밖에 제23조에 따른 부가급여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2)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84조(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 기준, 가입자의 보험료율,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고,

재정운영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설치하는 위원회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①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② 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③ 의료계 대표단체 및 약업계 대표단체가 추천하는 8명, ④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각 1명, ⑤ 공단 이사장 및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⑥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으로 구성됨.³⁾

- 재정운영위원회는 노동조합·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 농어업인 단체·도시자영업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3명, 시민단체에

받아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3.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조(공무원인 위원) 법 제4조제4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 추천하는 사람 4명,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각 1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명으로 구성됨.⁴⁾

□ 현행법 제26조⁵⁾, 제68조⁶⁾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이사회는 사업운영계획 등 기관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의

4)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1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
2. 제1항제2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 단체·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제1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업인 단체, 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추천한다.

1. 농어업인 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 각각 3명씩 추천
2. 시민단체: 4명 추천

②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기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이사회) ① 공단의 주요 사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결 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운영계획 등 공단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와 그 밖의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6. 법 제37조에 따른 차입금에 관한 사항
7. 법 제38조에 따른 준비금, 그 밖에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6)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준용 규정) 심사평가원에 관하여 제14조 제3항·제4항, 제16조, 제17조(같은 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1조(준용 규정) 심사평가원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 (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차입금, 준비금, 그 밖에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이사회는 기관장(공단 이사장, 심사평가원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이 중 비상임이사는 관련 직역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됨.

-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 이사 14명 및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이사는 5명의 상임이사와 9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비상임이사는 노동조합·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각 1명으로 구성됨.⁷⁾

- 심사평가원의 임원은 원장 1명, 이사 15명 및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이사는 4명의 상임이사와 11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비상임이사는 공단이 추천하는 1명,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하는 5명, 노동조합·사용자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됨.⁸⁾

7)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임원) ① 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14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중 5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노동조합·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8)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임원) ① 심사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이사 15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원장, 이사 중 4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②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한 관계 공무원 1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공단이 추천하는 1명

2.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하는 5명

3. 노동조합·사용자단체·소비자단체 및 농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과 공단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의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대표”)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요양급여 기준, 보험료율 등),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요양급여비용 계약, 결손처분 등), 공단·심사평가원 이사회의 심의사항(사업운영 계획, 정관 변경 등)이 가입자·수급자 등 ‘전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추천단체를 ‘전국적 규모’로 명시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5년 7월 현재 각 위원회 및 공단·심사평가원 이사회의 근로자대표 추천단체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각 1명씩 추천한 근로자대표(2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정운영위원회의 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각 1명씩 추천한 근로자대표(5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의 경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추천한 1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만,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9)에서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나 그 연합단체로 정의하면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의 층위를 갖춘 체계로 구조화하여 그 설립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노동단체’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을 의미하는지 혹은 ‘노동조합’ 외에 행정청에 신고되지 아니한 노동자의 일반 조합까지를 광의로 포함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24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23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총연합체인 노동조합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한장노총), 전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노총), 국민통합노동조합총연맹(통합노총) 및 대한민국노동조합총연맹(대한노총) 등 총 6개가 있음.¹⁰⁾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 참고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근로자대표 추천단체를 「노동조합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명시(「공인노무사법」 제3조의4제4항제5호나목¹¹⁾)한 경우와 「노동조합법」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규정한 사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3항제1호¹²⁾)가 있고, 개정안과 같이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라 하여 「노동조합법」을 인용하지 아니하면서 '노동조합' 대신 '노동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례(「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¹³⁾) 등이 있음.

□ 또한, 개정안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경우라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맹하지 아니한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¹⁴⁾의 참여가 배제되는 점에 대하여도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10) 고용노동부, 2023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2024. 12.

11)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4(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④ 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임원) ③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3)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4)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총연합단체 미가맹 조합원은 2023년 기준 총 479,758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2,737,379명) 대비 약 17.5%에 해당함.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의견

- 건강보험정책 등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반영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개정안은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이해도를 갖춘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를 제한하고 일부 단체의 참여가 원천 차단되어 근로자 단체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는 아니지만 연령·성별·지역별로 구성된 다양한 노동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추천단체 중 근로자단체의 경우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 단체’로 한정하는 것은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지역단체 등 다른 추천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각 단체별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논란의 우려가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노동계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맹하지 아니한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참여가 배제되는 점에 대하여도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동 법안의 입법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평가원의 업무 특수성 및 분야 관련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등 특정 직역에 속한 근로자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음.

□ 대한의사협회

- 개정안에 따를 경우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맹하지 아니한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참여가 배제될 것이므로 개정 취지와 같이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직종 및 여러 노동단체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의료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이므로 보건의료 관련 위원회 구성에 비전문가 단체 등이 중복하여 다수 위원으로 관여하기보다는, 대한의사협회나 각 의료분야 전문과목 단체 등으로부터 의료전문가 추천위원을 확충하는 것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집행의 의료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03